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 2019.12.24.
개정 2021.10.19.

< 원칙 1 >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단은 연금제도 건전성 유지 및 연금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운용하는 투자 자산에 관하여 주주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투자자산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최종적인 책임에 따른 납세자의 잠재적인 부담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탁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관리주체인 공단의 책임 하에 수행되며, 공단은 기금의 수탁자로서 중장기 기금 자산 가치의 증진, 기금가입자 및 수익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 기업 점검,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이행합니다. 단계적으로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공단은 수탁자 책임 이행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스튜어디십 코드에 참여하고,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정해 공개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및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수탁자책임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수탁자 책임 정책관련 자산 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중요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단은 충실한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요소는 물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요소를 점검합니다. 더 나아가 의견서 전달 등 비공개 서신 교환과 대화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중점 관리 사안의 공개, 필요하다면 주주제안과 주주소송 등 다양한 주주활동을 내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공단은 의결권행사 기준이 포함된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도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리 공개한 공단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도록 하고, 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들이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보유 비중 등을 감안해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주주총회 전에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합니다.

공단은 내부 역량 등의 여건을 고려해 국내 주식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여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채권 등 자산군에 대해서도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검토합니다.

< 원칙 2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공단은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관리·해결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이행합니다.

공단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다음 유형의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인 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치권 등의 부당한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
- 공단의 수탁자 책임 이행 관련 임직원이 기금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해를 우선시 할 가능성
- 공단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기금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해를 우선시 할 가능성
- 의결권 자문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이 공단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이익이 아니라 자사의 이익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미리 공개한 정책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정부·정치권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부터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합니다.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정부 관계부처의 영향력 행사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과 선임 절차 등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있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문화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주요 사안 관련 주주활동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책임성·독립성 있게 심의·의결함으로써 정부·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공단 내 위원회 위원 및 담당부서 직원 등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위원은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척하는 규정 등을 마련해 운영합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의성실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이해상충방지의무 등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상세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며, 의무 위반 시 해촉도 가능합니다.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여러 주주활동은 미리 작성해 공개한 세부 기준이나 원칙 등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수탁자 책임 이행의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는 다른 고려에 의해 기금 및 가입자·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단 부서 및 임직원 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관련 부서에 한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를 마련하고, 내부 구성원이 외부의 부정 청탁이나 압력에 적극 대응하게 하는 등 다양한 내부 견제 및 통제 장치를 마련하며,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합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의결권 자문기관을 활용합니다.

또한 외부 위탁운용사 및 의결권 자문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의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 외부 기관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합니다.

공단은 수탁자책임의 이행을 위한 각종 내부 정책, 기준, 절차 및 세부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주주활동 현황과 결과 등을 공개하여 수탁자책임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내·외부 견제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 원칙 3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공단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기업 가치 및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ESG 등 비재무요소를 포함하는 기회 및 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예컨대 매우 낮은 수준의 배당, 성과 비례 부분이 없는 부적절한 이사보수 체계, 각종 위법행위, 적정 외의 감사의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주총회 안건 부결 등 문제는 특히 유의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은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과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나 이사 등과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으로 기금 가치를 보호하고 가입자 및 수익자 중장기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단은 대상 기업의 중장기 발전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위험이나 기회 요인이 나타나는 경우 건설적인 대화로 문제의 해결 등을 모색합니다. 그럼에도 위험 요인 등이 지속되는 경우 역량과 전문성 같은 내부 여건, 법적 제약, 문제 해결의 긴급성이나 효율성 등 여러 요소를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조금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의 수행을 검토합니다.

<비공개 활동>

- 우려 사항 등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자료 제공 및 설명 요청
-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묻는 질의서 전달 및 서신 교환
- 기업 측 경영진이나 이사와의 추가적인 비공개 대화
- 공단이 판단하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 등 의견 제시

<공개 활동>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밝히고, 기업에 변화를 촉구하는 기업지배구조 원칙 공개
- 중점 관리 사안 제시·점검
- 의결권 행사

- 의결권 행사 내역·사유의 주주총회 개최 이전 공개
- 사외이사 추천, 정관 변경 등 주주제안(참여 포함)
- 법적 제재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 기업에 대한 대표소송, 집단소송 등 주주소송 참여 또는 제기 등
- 그 밖에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정한 주주활동

다만, 단기적으로 내부 전담 인력 투입에 어려움이 있고, 경험이나 전문성이 불충분하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는 경우 불필요한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화나 의결권의 충실한 행사에서 출발해 주주활동을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주주활동을 위해 깊이 있는 조사·연구, 의견·경험 교환, 세미나 개최,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방안을 기업에 제시해 논의합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기업 이사회 의 역할 강화, 내부통제 강화, 민간에서 제정·공개한 환경경영·사회책임경영·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시행, 신뢰할 만한 기관의 공식 프로그램[가령,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참여·이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장교란행위 금지,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 공정 공시 등 자본시장 법령 등이 주주활동과 관련해 정한 바를 준수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주활동 수행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나 그렇게 간주될 여지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시작할 때 그러한 뜻을 명확히 전합니다. 의도와 달리 그러한 정보를 취득했다면, 기업 측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정보 공개 전까지는 주식 매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공단의 주주활동 수행 등 관련 정보가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 시장교란 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단은 기금 가치를 보호하고, 대상 기업의 중장기 발전과 주주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충실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행사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하고 준수하며, 보유한 주식 전체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합니다.

공단은 정부·정치권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부터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이행합니다.

- 독립적인 제3의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충분히 참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미리 정해 공개한 의결권 행사 정책과 세부기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구성, 추천 절차 등에서 보다 독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에 관해 심의·의결합니다.
-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시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특히,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는 주주총회 전에 공개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추구합니다.

공단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정책」을 제정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절차,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공단은 중요한 안건의 경우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며, 세부기준을 적용해 용이한 판단이 가능한 일상적인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단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전문성 있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참고해 자체 세부기준과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공단은 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향합니다. 주주총회 이후 14일 이내에 공단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 규모나 비중 또는 보유 지분을 등에서 중요한 기업·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개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단은 위탁 자산운용사로부터 보고 받은 이행 내역을 포함하여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 관련하여 논의된 모든 내용(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포함)을 일정 기간(5년)동안 내부 기록으로 유지합니다.

공단은 자산소유자로서 이행한 모든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요약한 수탁자책임 연차보고서를 연 1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요약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 공단이 직접 이행한 수탁자 책임 활동
- 공단이 자산소유자로서 위탁 자산운용사 및 국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관여활동
- 성공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사례

공단은 고객이 전체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적·질적 수준을 갖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이에 전체 수탁자 책임 활동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범주화한 요약 내역 등을 연차보고서에 포함합니다.

- 이행 주체별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 수탁자 책임 활동 유형별 이행 내역
- 수탁자 책임 활동의 쟁점 이슈별 이행 내역
- 전체 의결권 행사 비율,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요약 내역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인해 투자대상기업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단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내부 조직 체계 마련 및 직원의 역량·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공단은 수탁자 책임 담당자를 배치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로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임직원에게 다양한 내·외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탁운용사와의 주기적인 대화, 간담회 등을 통해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단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증권사 및 외부의결권 자문기관, 기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합니다.

공단의 투자 철학과 정책에 따라 충실히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 위탁운용사, 증권사 및 의결권 자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 및 지배구조, 내부 자원 투입 수준과 역량,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이행 수준, ESG 분석 전문성 등을 고려합니다.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공단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중장기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자산재배분 등에 반영합니다.